

의안번호	2202587
의 퇴 인	강선영의원
회 답 일	2024. 08. 02.
추 계 번호	24D2253
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0조(공무원 의제 등)	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에 대해 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0조(공무원 의제 등)	제1호: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에게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여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될 경우, 국립묘지 조성비용 및 안장비용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개정안은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에 대해 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
 - 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¹⁾에 따르면, 공무원

1) 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

중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는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임.

- 방위사업청에 따르면, 개정안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에게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여 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상의 국가공무원으로 인정되었다면, 최근 5년간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는 임직원은 2019년에 1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
- 국가보훈부에 따르면,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1명 추가될 경우, 조성비용 204만원²⁾이며, 안장비용은 108,000원으로 파악되어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. 다만,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국립서울현충원, 국립대전현충원 및 국립연천현충원

가....차(생략)

카. 산불진화·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

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1급·2급·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공상공무원에 한한다)으로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(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)

파, 하(생략)

2) 5만기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국립연천현충원의 총 조성비용은 1,020억원이며, 1기당 평균 조성비용은 204만원임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